02

환경성 석면피해, 우리 모두가 책임집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Ⅰ. 석면(asbestos, 石綿)이란?
Ⅱ. 석면피해구제제도란?
Ⅲ.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한 노력
Ⅳ. 국제협력활동
Ⅴ. 향후 추진방향

# I 석면(asbestos, 石綿)이란?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사문석계 또는 각섬석계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수천 년 전부터 직물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석면 광산이 개발되면서 돌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제조업, 건설업 등이 발전하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쓰였다.

석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유연성과 절연성을 지니고 있어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에서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1987년)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단계적 사용 제한을 거쳐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은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총 6종이다.

[ 백석면(Chrysotile) ]

[ 갈석면(Amosite) ]

[ 청석면(Crocidolite) ]



# II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도입 배경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었으나, 옛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등 비직업성(환경성)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석면이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기에 그간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본 우리 사회 전체가 석면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구제 대상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인정)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특별유족인정)으로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있다.

-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종양이 발생됨
- **원발성 폐암** :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흡연 시에는 발병확률이 더욱 크게 상승함
- **석면폐증** :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호흡이 곤란해짐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 곳곳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짐

## 구제 내용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장의비와 구제급여조정금이 지원된다. 특별유족에게는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 '14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

<table>
<tr><th rowspan="2" colspan="2">질병명</th><th colspan="2">석면피해<br>(생존하여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th><th colspan="2">특별유족<br>(피해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th></tr>
<tr><th>요양급여</th><th>요양생활 수당</th><th>장의비 및 특별장의비</th><th>특별유족조위금</th></tr>
<tr><td colspan="2">원발성 악성중피종<br>/원발성 폐암</td><td rowspan="5">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br>(연간한도 약 400만원)</td><td>1,232,900원/월<br>(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td><td rowspan="5">2,332,230원<br>(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td><td>34,983,450원<br>(장의비의 1,500/100)</td></tr>
<tr><td colspan="2">미만성<br>흉막비후</td><td rowspan="2">887,680원/월<br>(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td><td rowspan="2">17,491,720원<br>(장의비의 750/100)</td></tr>
<tr><td rowspan="3">석면<br>폐증</td><td>1급</td></tr>
<tr><td>2급</td><td>591,790원/월<br>(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td><td>11,661,150원<br>(장의비의 500/100)</td></tr>
<tr><td>3급</td><td>295,890원/월<br>(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td><td>5,830,570원<br>(장의비의 250/100)</td></tr>
</table>

※ 구제급여조정금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 조기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며, 특별유족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간 받은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됨



## 지원서비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외에도 성공적인 요양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는 환경보건교실과 건강치유캠프를 운영하고 건강정보지 발행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고통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신청 절차

석면피해 또는 특별유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역 지자체(시 · 군 · 구청)에 석면피해(또는 특별유족)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인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2심) 또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3심)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피해구제 신청 및 인정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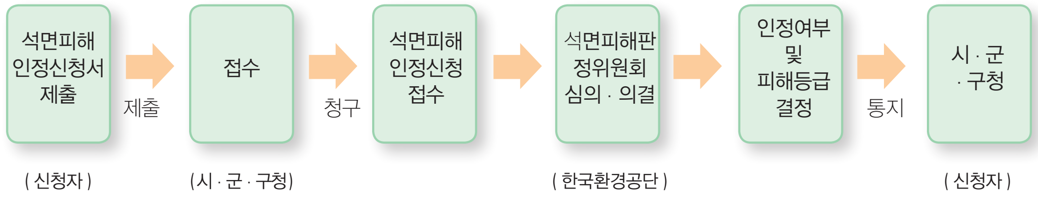


**[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

| 구 분 | 제출 서류 |
|---|---|
| 석면피해인정 신청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장해 검사서(석면폐증의 경우) |
| 특별유족인정 신청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증빙자료(진단서, CT 등) |
| 공 통 | 주민등록표등본, 석면노출정도확인질문서, 대리인 확인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 |

# III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한 노력

## 「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생활공간 주변에 석면광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부터 폐석면광산, 과거 석면공장 주변 지역 등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약 1천명의 석면피해의심자를 찾아내었다. 2011년부터는 효율적인 건강영향조사 추진과 석면피해의심자 건강관리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석면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석면질병은 희귀질병이며 잠복기가 긴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이미 중증에 이른 환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질병에 걸려도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 본인이 구제신청을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서비스(이하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의 협조로 의료기록 등을 통해 석면질환 가능성이 높은 의심자를 식별한 후, 피해의심자를 직접 찾아가 구제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찾기 서비스를 통해 발굴된 석면피해 의심자에게는 우선 유선상담과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청 대상자의 경우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153개 시 · 군 · 구를 순회하며 방문 상담과 신청접수 대행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3년까지 432명의 석면피해자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협업기관 ❶<br>국민건강보험공단 | 협업기관 ❷<br>안전행정부 | 협업기관 ❸<br>기초 지자체(시. 군. 구청) |
|---|---|---|
| 석면관련 질병 건강보험정보 | 피해의심자 및 유족의<br>거주지 기본정보 | 피해의심자 및 유족의<br>세부 연락정보 |

**[ 주관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찾기 및 구제급여 지급)**

###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항

- 중증환자를 위한 **신청 작성대행 서비스**
- 동사무소 등 **구비서류 동행지원**
- 장거리 이동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무기록 위임발급 대행**
- 기타 제도관련 **불만사항 의견 수렴 및 안내**

### 석면건강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찾아가기 서비스 절차

[ 우편물 송부 ]

[ 포스터 부착 ]

[ 유선상담 ]

[ 일대일 현장상담 ]

[ 신청작성대행 ]

[ 부재시 안내문 부착 ]

[ 구비서류 동행지원 ]

[ 의무기록 위임발급 ]





# IV 국제협력활동

환경부는 아시아지역 석면문제에 대한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과 2012년 부산에서 아시아 석면 이니셔티브(Asian Asbestos Initiative, AAI)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 이니셔티브(SI) 글로벌 녹색성장 협력 사업 등을 통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석면관리제도와 석면질병진단 기술 등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위탁업무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 주관 기관인 환경재생보전기구는 2011년부터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석면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3월에는 미국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2012 EBI 비즈니스 성과 어워드」에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업무가 '사회공헌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 한국 - 일본간 정례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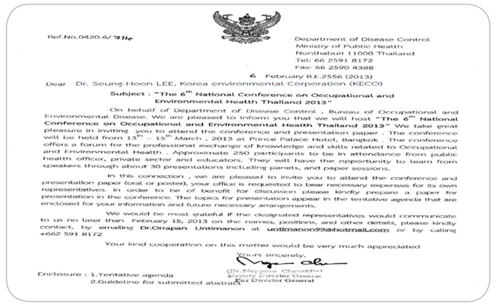

Ref.No.0420.4/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
Ministry of Public Health
Nonthaburi 11000 Thailand
Tel: 66 2591 8172
Fax: 66 2590 4388

6 February B.E.2556 (2013)

Dear Dr. Seung-Hoon LEE, Korea environmental Corporation (KECO)

**Subject : "The 6th 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Thailand 2013"**

On behalf of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 , Bureau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Disease.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will host **"The 6th 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Thailand 2013"** We take great pleasure in inviting you to attend the conference and presentation paper . The conference will be held from 13th – 15th March , 2013 at Prince Palace Hotel, Bangkok . The conference offers a forum for the professional exchange of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 Approximate 250 participants to be in attendance from public health officer, private sector and educators.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speakers through about 30 presentations including panels, and paper sessions.

In this connection ,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attend the conference and presentation paper (oral or poster), your office is requested to bear necessary expenses for its own representatives. In order to be of benefit for discussion please kindly prepare a paper for presentation in the conference. The topics for presentation appear in the tentative agenda that are enclosed for your information and future necessary arrangements.

We would be most grateful if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would communicate to us no later than February 15, 2013 on the names, positions, and other details, please kindly contact, by emailing **Dr.Orrapan Untimanon** at untimanon99@hotmail.com or by calling +662 591 8172

Your kind cooperation on this matter would be very much appreciated

Yours sincerely,

(Dr.Nopporn Cheanklin)
Deputy Director General
For Director General

Enclosure : 1.Tentative agenda
2.Guideline for submitted abstract

[ 태국 공중보건부 초정장 ]

# V 향후 추진방향

201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석면 건강 피해자와 특별유족을 발굴하여 약 260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석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공동의 위로를 전함으로써 공정한 피해구제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최초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등을 통해 다툼을 조정하여 왔으나, 그 역할에 한계가 있어 결국 법정소송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 피해구제제도는 제도적 틀 안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오염피해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같이 사회 주체들이 환경 오염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원조성 등을 통해 구제에 힘을 모으는 방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로서, 세계 각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석면 건강피해자의 요양생활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피해자의 발굴과 지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 [ 참고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현황

( '14. 9. 30 기준, 단위 : 명 )

| 연도 | 구분 | 계 | 악성 중피종 | 폐암 | 석면폐증 | | | | 미만성 흉막비후 |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 |
| 합계 | 석면피해 | 952 | 234 | 80 | 636 | 86 | 260 | 290 | 2 |
| | 특별유족 | 534 | 468 | 56 | 10 | 6 | 3 | 1 | 0 |
| | 소계 | 1,486 | 702 | 136 | 646 | 92 | 263 | 291 | 2 |
| 2011 | 석면피해 | 249 | 82 | 12 | 155 | 27 | 54 | 74 | - |
| | 특별유족 | 210 | 197 | 10 | 3 | 3 | - | - | - |
| | 소계 | 459 | 279 | 22 | 158 | 30 | 54 | 74 | - |
| 2012 | 석면피해 | 230 | 72 | 15 | 143 | 15 | 66 | 62 | - |
| | 특별유족 | 226 | 206 | 20 | - | | | | - |
| | 소계 | 456 | 278 | 35 | 143 | 15 | 66 | 62 | - |
| 2013 | 석면피해 | 287 | 44 | 34 | 209 | 27 | 81 | 101 | - |
| | 특별유족 | 59 | 41 | 16 | 2 | 2 | - | - | - |
| | 소계 | 346 | 85 | 50 | 211 | 29 | 81 | 101 | - |
| 2014 | 석면피해 | 186 | 36 | 19 | 129 | 17 | 59 | 53 | 2 |
| | 특별유족 | 39 | 24 | 10 | 5 | 1 | 3 | 1 | 0 |
| | 소계 | 225 | 60 | 29 | 134 | 18 | 62 | 54 | 2 |

환경정책
Briefs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